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09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김정재

김희곤 • 박대수 • 박덕흠

이종배 · 정찬민 · 최영희

태영호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이들 지원 방안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 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 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 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 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국 가가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14조 및 제26조의2).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 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 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 두 합산한다.

제8조의 제목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대군인의"를 "매년 제대군인의"로,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 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26조의2제1항 중 "실태조사"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요청할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요청할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 면 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 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한 사람을 말한다.

2. · 3. (생략) <신 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 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 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 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 개 정 아

-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 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 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 [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 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 역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 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국가보훈처 저 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 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u>제대군인</u>의 생활 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u>조사할</u>수 있다.

<신 설>

-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생략)
 - ③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 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 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현	할산
한다.	

제8조 <u>(실</u> 태조사	<u>·)</u> ①	 	

----- <u>매년 제대군인</u>------- <u>조사하</u> <u>여야 한다</u>.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 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 ·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있다.
 -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 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 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 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 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 인과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 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 소득금액증명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출 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
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u>제3항</u>